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

○ 제안일: 2026. 11. 10.

○ 회부일: 2026. 11. 12. (의안번호: 26-131)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9조)

나. 양육 지원 세부 사항 신설(안 제6조3호 추가 및 기존 조항 이동)

다. 띄어쓰기 등 구문 정비(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10. 15.~11. 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5조,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양육 지원 세부 사항 신설하고 기존조항을 이동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26. 9. 10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호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이라는 추상적·포괄적 규정을 보완하여 제3호에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로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고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사항을 완료하여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부정 수급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김영임 (9060)	유은숙 (90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 제6조에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2027. 1.~2030. 12. (4년)

나. 운영예산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6.8.31.기준) 활용하여 작성함

- 2027년도는 총 사업대상자 수의 70%로 산정, 이후 매년 5% 증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합계
세입	○ 구비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통비 지급	266,000	281,000	295,000	310,000		1,152,000
	○홍보비	3,000	2,000	2,000	2,000		9,000
	소계(b)	269,000	283,000	297,000	312,000		1,161,000
□ 총 비용(a-b)		-269,000	-283,000	-297,000	-312,000		-1,161,000

4. 재원조달 방안: 전액 구비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운영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미래교육국 가족정책과 한아름
연 락 처	02-3153-8933

참 고 자 료

1. 관계법령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4개월 이하 영아 현황: 3,809명